

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 등 채용공고

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 등을 공개모집합니다.

1.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

구분	분야	인원	담당직무
개방형 직위	법무실장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무실 업무 총괄 - 법률자문 및 준법지원 업무 - 송무관리 업무 - 법령 조사·개선 및 사규관리 업무
전문직	법무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률자문 ○ 법령 제·개정 연구 ○ 인권센터 관련 업무 ○ 기타 법무지원 업무
	금융 (부동산금융)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의 자산관리업무 겸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○ 공사의 자산관리업무 겸영을 위한 예비·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-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 사업계획서, 예상수지 계산서 등 작성 - 정관 작성, 내부통제기준 수립 등 - 리츠 운용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- 인허가기관(국토교통부)과의 업무협의를 등 겸영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
사무 기술 전문가	공공디벨로퍼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○ 사회주택 통합 커뮤니티 센터 구축 지원 ○ 사회주택 (예비)사업자 컨설팅 및 사회주택 아카데미 과정 운영 ○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2. 지원자격 (경력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)

※ 경력기간 산정은 전일제 근무(주 40시간)를 기준으로 하고, 시간제 근무(주 40시간 미만)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

· 예시: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⇒ 경력 2년 인정

구분	분야	지원자격
공통사항		<p>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용예정일(2020년 4월 3일 전후)부터 근무 가능한 분 ○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[단, 현역의 경우 면접시험 등 전형절차 이행이 가능하고 임용예정일 전 전역(소집해제)할 경우 지원 가능] ○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
개방형 직위	법무실장	<p>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2.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3. 4급 이상의 공무원(판사, 검사 포함)으로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4. 서울시 투자기관, 정부투자기관의 2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. 국내·외 대학교의 교수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6. 변호사로서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7.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8. (사내 임용 지원자격)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분으로서 2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<p>※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, 검사 경력 5년 이상인 분 · 주택 또는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(지방공사 포함)에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분

구분	분 야	지원자격
전문직	법무	<p>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</p> <p>1. 변호사로서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</p> <p>※ 우대사항: 주택 또는 도시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분</p>
	금융 (부동산금융)	<p>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</p> <p>1. 부동산 관련 분야(경영학, 경제학, 법학, 도시공학, 토목공학, 건축학,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)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·운용,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·자문 등의 경력이 아래 부동산 관계기관에서의 업무 경력 5년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인 분</p> <p>2.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·운용, 부동산의 취득·처분·관리·개발·자문 등의 경력이 아래 부동산 관계 기관에서의 업무경력 5년을 포함하여 9년 이상인 분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부동산 관계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동산투자회사, 자산관리회사, 부동산투자자문회사 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·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·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·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 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·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</div>
사무기술 전문가	공공디벨로퍼	<p>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</p> <p>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사회주택 관련 경력이 있는 분</p> <p>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기업사회공헌활동 관련 기획부서 또는 교육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분</p> <p>3.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</p>

※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7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0.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11.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, 해임,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※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의 법무실장 분야(개방형 직위) 지원 제한사항

1. 징계처분,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
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(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.이하 같다)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및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)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견책 6월(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
 - 나. 감봉 1년
 - 다. 강등, 정직 1년6월
3. 취업규정 제8조 내지 12조를 위반하여 감사원, 서울시, 감사부서 등에서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자
4. 1급 내지 2급으로의 승진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에 의한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
3. 근무조건

구분	분 야	대우수준	연 봉	근무장소	계 약기 간
개방형 직위	법무실장	처장급	93백만원 내외	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사 근무	임용일로부터 2년 [공사 필요시 연장 가능]
전문직	법무	나급	62백만원 내외		임용일로부터 2년 [공사 필요시 연장 가능]
	금융 (부동산금융)	나급	62백만원 내외		임용일로부터 1년 [공사 필요시 연장 가능 (연장시 최장 1년 이내 기간에 한함)]
사무기술 전문가	공공디벨로퍼	마급	29백만원 내외	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사 근무 또는 서울시 내 사무실 근무	임용일로부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에 의한 위·수탁 기간 종료일(2021.12.31.)까지 [공사 필요시 연장 가능 (연장시 최장 위 협약의 연장 위·수탁기간 종료일까지에 한함)]

- ※ 상기연봉은 기본연봉에 평가급을 추가한 금액이며, 평가급은 월봉의 200%를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및 개인성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※ 기본연봉은 최종합격 후, 공사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.
 - 단, 법무실장 분야(개방형 직위) 사내 임용 시의 연봉은 공사 보수규정 등에 의합니다.
- ※ 평가급은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.
 - 금회 채용자의 경우 임용일부터 2020. 12. 31.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급이 2021년 지급예정입니다.
- ※ 기타 근로조건은 공사 ‘인사규정’ 및 ‘전문직 등 직원 운영지침’에 의합니다.

4. 전형일정

1)지원서접수	⇒	2)서류합격자 발표(예정)	⇒	3)면접시험	⇒	4)합격자발표 (예정)	⇒	5)임용등록	⇒	6)임용예정 (근무개시)
'20.2.24.~3.9.		'20.3.18.		'20.3.23.~3.25.		'20.3.27.		'20.3.30.~4.1.		'20.4.3.

5.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0. 2. 24.(월) ~ 3. 9.(월)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 지원

※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방문접수: 서울주택도시공사 13층 인사부 채용담당

-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 → 서울주택도시공사 지하 1층 연결

○ 채용 전용 홈페이지 지원: <http://oras.jobkorea.co.kr/i-sh>

-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

- '모아찍기' 등으로 인쇄 후 스캔 금지

다. 제출서류(양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)

○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자격증은 사본 제출)

※ 채용 전용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자격증은 임용등록 시 원본을 확인합니다.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의 경우,

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제출서류
공통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경력기술서, 개인정보 수집·동의서 각 1부(공사양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서,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건설·전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(한국건설인협회 등)의 증명서도 인정 - 재직 부서별 근무기간, 담당업무분야 또는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, 미기재시 서류심사에서 제외(탈락) 될 수 있음 - 경력입증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-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, 공고일 이후 발급분, 경력증명기간 포함) ○ 학위증명서 1부(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, 학위 조건 지원자에 한함) ○ 자격증 사본(자격증 보유조건 지원자에 한함) ○ 우대사항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 ○ 기타 자격입증방법 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

구 분	제출서류	
금융 (부동산금융) 지원자 추가 제출	○ 당해업무 종사 경력 증명서(한국리츠협회 양식)	
	○ 부동산관계기관 관련 증빙서류	
	기관별	증빙자료
	부동산투자회사, 자산관리회사,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	○ 인가(등록)사본 ○ 허가(등록)사본
	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	○ 거래소상장확인서
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	○ 등기부등본 사본 ○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 확인가능자료(재무제표) ※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·표시된 재무제표	
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 기관으로 부동산 중개·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	○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○ 회계법인: 허가(등록)사본 ○ 컨설팅기관: 등기부등본 ○ 부동산 중개·자문 등에서의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재무제표) ※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·표시된 재무제표	

6. 선발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심사

- 심사기준: 전문지식 및 경험,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,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
- 서류심사 합격자(면접대상자) 발표: 2020. 3. 18.(수)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
※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.
※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
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.(동점자 모두 합격)
※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
- 심사일자: 2020. 3. 23.(월) ~ 3. 25.(수) 예정
※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입니다.
- 심사장소: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(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, 대청역)
또는 공사 인근지역
- 심사기준: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
논리성 및 판단력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, 품행·예의 및 성실성 등

7. 합격자 발표(예정일자)

-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: 2020. 3. 27.(금) 공사 홈페이지 게시
 - ※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.
 - ※ 합격자 결정절차
 - 법무실장 분야: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최종후보자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·사장에게 추천합니다.
 - 법무, 금융(부동산금융), 공공디벨로퍼 분야: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인 자 중에서 분야별 최고득점자를 본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 - ※ 예비합격자의 수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입니다.
 - ※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본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미등록, 신체검사 불합격,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2020년 9월 26일 이전(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)에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시 임용합니다.
- 임용예정일: 2020. 4. 3.(금)
 - ※ 임용등록기간(2020. 3. 30.(월) ~ 4. 1.(수)) 내 임용등록을 필한 분에 한하여 임용 가능합니다.
 - ※ 공사 필요 시 또는 임용대상자의 종전 직장 퇴직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 공사에서 승인 시 임용일 조정 가능합니다.
 - ※ 임용 후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부적격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.

8. 기타사항

-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,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 기재사항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,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.
- 임용탈락자의 경우, 방문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, 본인 반환 청구 시 반환 예정입니다. 해당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 됩니다.
- ※ 반환 청구기간: 2020. 4. 10.(금) ~ 2020. 4. 30.(목)
-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에 따라,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)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,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.(필요시 증빙 요청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 ☎(02)3410-7173 로 문의 바랍니다.

2020. 2. 24.

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